

대구지방법원 2022. 1. 14 선고 2021가단12981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. 14.

주 문

1. 소외 D[E생]과 피고 B 사이에 ‘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/15 지분’과 ‘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516/18120 지분’에 관하여 체결된 2020. 12. 16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 C은 소외 D에게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/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피고 B은 소외 D에게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516/1812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

판사 김광남

별지